

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9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10. 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10. 11

라. 상정일자 : 2010. 10. 21.(제18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자치행정국장 황의식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자동차등록령」 개정에 따라 2010.12.1.부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업무 처리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2제1항)

-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2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개정 조례안은

-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·수탁하여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민원 편의를 위한 제도로 개정에 따른 세수에는 변동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질 의>

○ 전원기 위원

- 자동차세 991억원은 징수율 여부
- 체납액 징수대책 및 군·구별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
-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

<답 변>

○ 황의식 자치행정국장

- 991억원은 부과금액임.
-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팀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홍성욱, 이재병, 전원기, 허회숙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위원 4명 : 찬성 4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) ①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지방세법」 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군수·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 신 설 ></p>	<p>제10조의2(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) ①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지방세법」 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·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군수·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.</p>